

## 5 재정운용성과

### 5-1. 보통교부세<sup>1)</sup>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5,735	9,629
인건비 절감	254	388
지방의회경비 절감	35	15
업무추진비 절감	108	20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845	2,13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287	6,887
지방청사 관리·운영	-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기준재정수요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pm \text{수요 자체노력})$$

↳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는 전전년도('17년) 해당 경비 기준액 대비 실제 결산상 지출된 경비가 적을수록, 행사·축제성경비 및 지방보조금은 전전년도('17년) 총 결산액 대비 해당 경비의 결산액 비중이 전전전년도('16년) 보다 감소할수록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 (예시) 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16년 0.98%에서 '17년 0.79%로 감소하여 '17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비중 감소분만큼 기준 재정수요액 반영분에서 산정공식에 따라 인센티브 받음

1) 보통교부세 산정은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후 부족액에 대하여 보정수요와 보정수입을 반영한 후 자치단체 노력도를 반영하여 산정함. ※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 조정률

##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8,540	622
지방세 징수율 제고	8,621	5,18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693	△8,017
경상세외수입 확충	△2,731	4,78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444	△725
탄력세율 적용	513	△596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의 합에 수입 자체노력을 가감하여 산정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 자체노력)

☞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체납누계액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경상세외수입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비율이 높을수록, 탄력세율 적용노력도는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 확충 노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각 분야별 산정방식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 우리 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방세 징수·체납·세외수입 체납 노력 등에서 전년도에 비해 낮게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8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b>합 계</b>		<b>873</b>
법령위반 과다지출	사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검사 부실 및 기타수입누락 부적정(연기군)	113
법령위반 과다지출	농산물 쇼핑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보조금 교부 부적정(연기군)	39
법령위반 과다지출	노장농공단지 사면보호공사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초래	8
법령위반 과다지출	불법 건축물 신고민원처리 부적정	6
법령위반 과다지출	중촌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 및 보조금정산 소홀 등	40
법령위반 과다지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업무 부적정	2
법령위반 과다지출	자율방범대 차량유류비지원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연기군)	115
법령위반 과다지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3
법령위반 과다지출	조천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73
법령위반 과다지출	연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224
법령위반 과다지출	전의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60
법령위반 과다지출	훼손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BRT도로 가드레일)관리태만	14
법령위반 과다지출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77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2
법령위반 과다지출	시설장사시설 운영관련 지도감독 소홀	12
법령위반 과다지출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미조치	3
수입징수 태만	무단점유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11
수입징수 태만	누락된 취득세관리 소홀	52
수입징수 태만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7
수입징수 태만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누락	1
수입징수 태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다감면	1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위 사항은 2012년(연기군 대상 포함)부터 2017년까지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8년에 우리 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148
교부세 인센티브	지방재정분야 우수	150
교부세 인센티브	'17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43
교부세 인센티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100
교부세 인센티브	사회적가치구현 우수	50
교부세 인센티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선도 지자체	60
교부세 인센티브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1,500
교부세 인센티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70
교부세 인센티브	갈등관리 협력 우수	25
교부세 인센티브	지자체 열린혁신평가 지원 우수	100
교부세 인센티브	재정분석 우수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